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87
------	------

제출일자 : 2022. 3. 17.
제출자 : 금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육군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인용법률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2016. 5. 29.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안 제4조)

- 1) '육군 제7688부대'를 '육군 제2051부대'로 변경
- 2)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을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 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으로 변경

- 3) ‘구로소방서장’ 을 ‘금천소방서장’ 으로,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을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으로,
‘구로세관장’ 을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 으로 변경
- 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을 「예비군법」 으로 변경(안 제10조)
- 다. [별표 1]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내 부서명칭 현행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5조, 「예비군법」 제14조의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의 : 육군 제2051부대 및 560군사안보지원부대와 합의함.
- 라. 기타 :
- 1) 입법예고(2022. 1. 1. ~ 2022. 1. 2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 4) 규제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7688부대”를 “제2051부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대원
11. 금천소방서장
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

제10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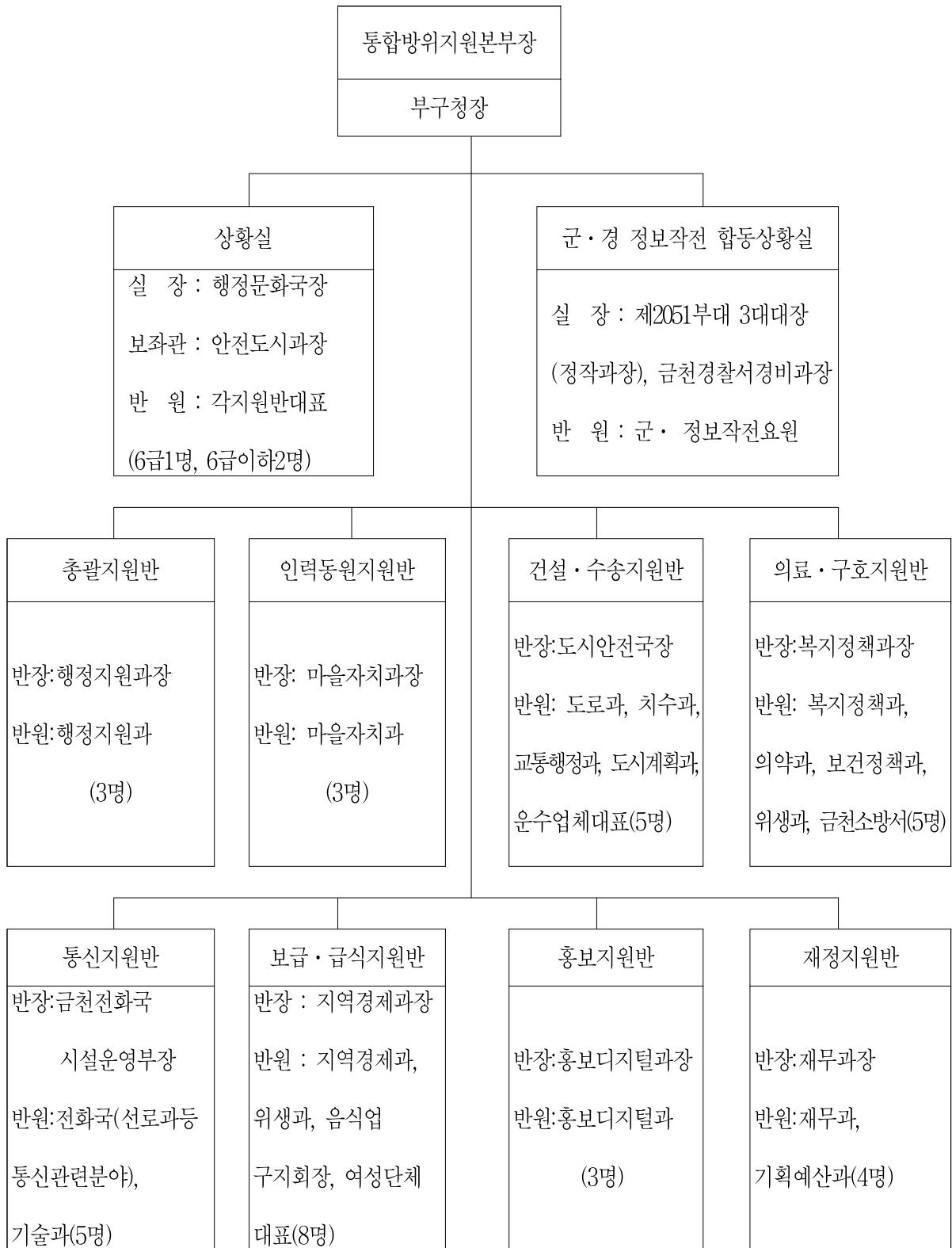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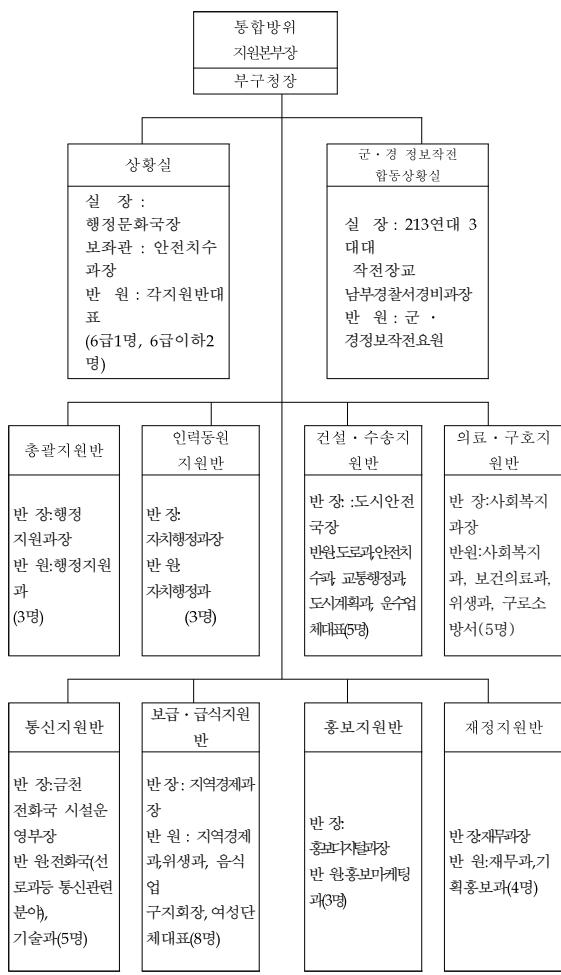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 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 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 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1. · 2. (생 략) 3. 육군 <u>제7688부대</u> 3대대장 4. · 5. (생 략) <u>6.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u> <u>담당관</u> 7. ~ 10. (생 략) <u>11. 구로소방서장</u> <u>12.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u> <u>13. 구로세관장</u> 14. · 15. (생 략) <u>④ (생 략)</u>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제2051부대</u> ----- 4. · 5. (현행과 같음) <u>6. 560군사안보지원부대 152군</u> <u>사안보지원대장 또는 소속 부</u> <u>대원</u> 7. ~ 10. (현행과 같음) <u>11. 금천소방서장</u> <u>12.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u> <u>13. 안양세관 구로지원센터장</u> 14. · 15. (현행과 같음) <u>③ (현행 제4항과 같음)</u>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2. (생략)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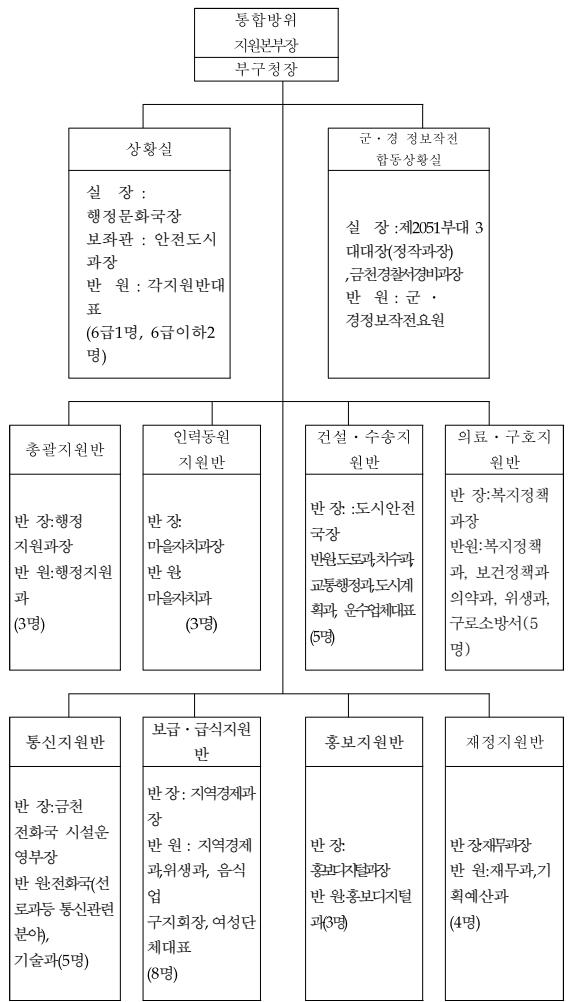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현행과 같음)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육군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정보형
연 락 처	2627 - 1006

현 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4.05.02>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 훈련 지원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나. 통합방위작전 ·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 및 지원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 · 관 · 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4.05.02>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4.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
5.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
6.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
7. 금천경찰서장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9. 금천세무서장
10. KT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11. 구로소방서장

12.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13. 구로세관장

14. 금천우체국장

15.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 간사는 각각 행정지원과장과 마을자치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방위협의회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구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구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구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동에 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동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구지원본부와 동지원본부의 구성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④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⑤ 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96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01.06.30)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지원본부

를 두고 구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동에 두고 동통합방위지

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동담당주사가 되고 동통합방

위지원본부의 구

성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별표1 상황실란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란중 “민방

위재난관리과장“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각각 “주민자치과장“ 및 “주민자치과“로 한다.

별표2 방위지원본부장란 “동주무“를 “동장“으로 하고, 상황실란 “동주무“를 “동담당주사“로 하

며, “각 반장“을 “직원 5명“으로 하고,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삭제한다.

부칙 (제373호, 2003.07.14)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보급·급식지원반란중 “지역경제과장“ 및 “지역경제과“를 각각 “산업환경과

장“ 및 “산업
환경과“로 한다.

②에서 ⑤까지 생략

부칙 (제432호, 2005.05.24)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주민자치과장” 을 “재난환경과장” 으로 한다.

별표1의 상황실란중 “주민자치과장” 을 “재난환경과장” 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
란중 “주민

자치과장” 을 “재난환경과장” 으로, “주민자치과” 를 “재난환경과” 로 하며, 의
료 · 구호지원반란중

“보건행정과” 를 “보건위생과” 로 하고, 보급 · 급식지원반 란중 “산업환경과장”
을 “산업지원과장” 으로,

“산업과” 및 “위생과” 를 각각 “산업지원과” 및 “보건위생과” 로 한다.

②에서 ⑨까지 생략

부칙 (제474호, 2006.12.29)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1항중 “재난환경과장” 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

부칙 (제519호, 2007.12.28)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 . <생략> . .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동담당주사” 를 “업무담당주사” 로 하고,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
본부 구성중

상황실 보좌관의 “재난환경과장” 을 “치수방재과장” 으로 하고, 인력동원지원반의
“재난환경과장, 재

난환경과” 를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로 하고, 건설 · 수송지원반의 “하수과” 를
“치수방재과” 로 하고,

보급 · 급식지원반의 “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 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로
하고, 홍보지원반의 “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를 “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로 한다.

부칙 (제568호, 200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호, 201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9호, 2011.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 중 의료 · 구호지원반 란의 “의약과, 보건위생과”를 “보건의료과, 위생과”로, 보급 · 급식지원반 란의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별표1 금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상황실 보좌관의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건설 · 수송지원반의 “치수방재과장”을 “안전 치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1호, 2014.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급 · 급식지원반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지 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한다.

별표 1의 홍보지원반 중 “기획홍보과장”을 “홍보마케팅과장”으로, “기획홍보과”를 “홍보마케팅과”로 한다.

부칙 (제807호, 20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 을 “마을자치과장” 으로 한다.

부칙 (제95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래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경제일자리과장” 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경제일자리과” 를 “지역경제과” 로 한다.

부칙 (제996,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상황실란 중 “행정지원국장” 을 “행정문화국장” 으로, “홍보마케팅과장” 을 “홍보디지털과장” 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076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도시환경국장” 을 “도시안전국장” 으로 한다.

관 계 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